

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(안)

의안번호	114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2. 4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부산직할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2. 주요골자

구유재산 매각처분신청 : 2건 3필지 63㎡(19평)

재 산 의 표 시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번호	지 목	소 재 지	신청면적		재산가액 (공시지가)
계				63	42,740
1	대	괴정동 1098-15	20	20	11,600
2	대	신평동 90-1	1,896중	20	15,960
		신평동 455-53	291중	23	15,180

3. 처분근거

○부산직할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의 2 ①항

○부산직할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제22조

구유재산 매각처분 신청서

1. 재산의 표시

가. 재산가격평정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번호	종 별	소 재 지	지 목	신청면적	재산가격 (공시지가)	비 고
계				63	42,740	
1	구유지(토지)	괴정동 1098-5	대	20	11,600	
2	〃	신평동 90-1	대	20	15,960	
		신평동 455-53	대	23	15,180	

나. 재산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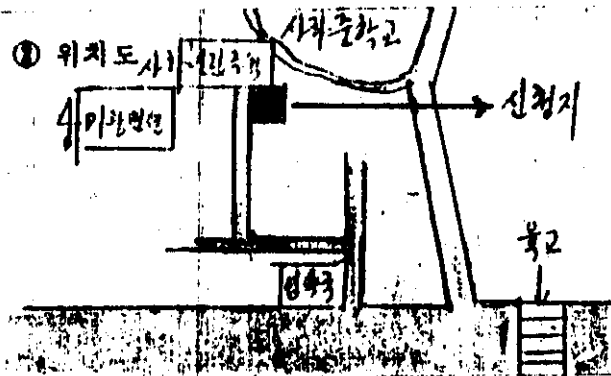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당초재산조정		소 재 지	면 적(m ²)		재산의 현황 (점유형태)	매수 신청인
	연월일	목 적		전체면적	신청면적		
1	89.5.4	승 계	괴정동 1098-15	20	20	81.4.30이전부터 신청 인 소유의 브록스레트 건물이 점유	괴정동 1105 이수용
2	91.7.23	무상양 여인수	신평동 90-1	1,896 291	20 23	〃	신평동 455-53 김현택

공유재산 실태 조사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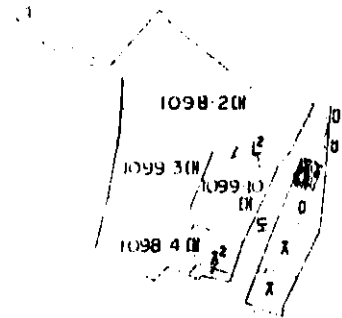
1. 재산의 표시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용도지역	점유자	
				주소	성명
괴정동 1098-15	대	20	주거지역	괴정동1105	이수용

2. 위치도



(위 치 도)



(측 량 도)

3. 재산의 현황

- 괴정4동 소재 사하중학교 서편 담장 옆에 위치함
- 위 지상에는 신청인 소유의 브록스래트 건물이 81. 4. 30 이전부터 점유되어 있는 소규모의 재산임

4. 처리의견

- 위 재산은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으며,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, 공유재산 처분동의 및 가격감정평가 후 점유현황대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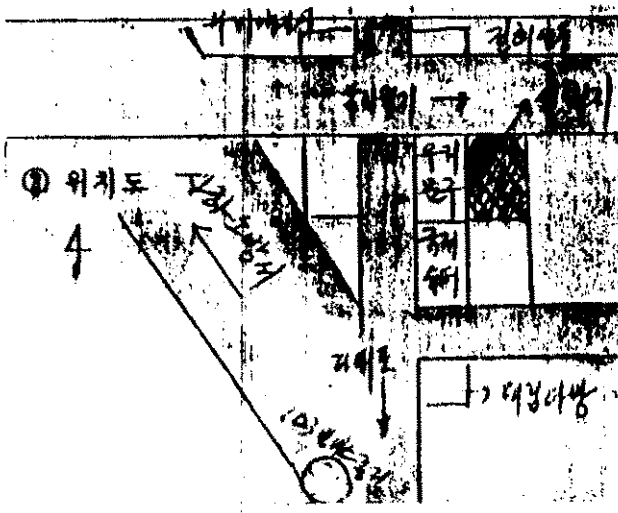
5. 매각근거 :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의 2 ①함

공유재산 실태 조사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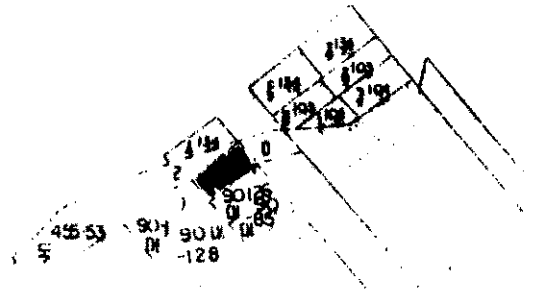
1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지 목	면적(m ²)	용 도 지 역	점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신평동 90-1 신평동 455-53	대	20 23	주거환경개선지구 (주거지역)	신평동455-53	김현택

2. 위치도



(위 치 도)



(측 량 도)

3. 재산의 현황

○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주지내 토지특별회계 재산으로 91. 7. 23 무상양여 받은 재산임

○103번 버스종점(어린이 놀이터부근)에서 북동방향으로 약 70m지점이며,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브록스레트 건물이 점유되어 있음

4. 처리의견

○위 재산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이며,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유 재산 처분동의 및 가격 감정 평가후 점유현황대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.

5. 매각근거 : 부산직할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 제22조